

수원지방법원 2019. 1. 15 선고 2017가단532948 판결 [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범

변론 종결 2018. 12. 18.

판결 선고 2019. 1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7,000,000원과 그에 대하여 2019. 1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2019. 1. 31.부터 2022. 3. 31.까지 매월 말일에 2,000,000원을 각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4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망 C의 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, 피고는 망 C의 동생이다. 망 C는 2017. 8. 12. 사망하였다.

나. 망 C는 '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2017. 3. 9.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번호 제217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7. 4. 20. 광주시 F, G호로 이사하여 사망시까지 피고와 같이 살았다.

다. 2017. 3. 6. 망 C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.

○ 매매대금 1억 3천 5백만 원

○ 계약금 1천 5백만 원 지급일 2017. 3. 6.

○ 잔금 1억 2천만 원 지급일 2022. 3. 31.

○ 부동산 명도일 : 2017. 3. 8.

○ 특약사항

- 잔금은 2017. 4.부터 2022. 3.까지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.

-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이행한다.

라. 한편, 망 C 명의 각 계좌에서 도합 29,415,104원의 돈(이하 '이 사건 금원'이라 한다)이 2017. 1. 5.부터 6. 26.까지 사이에 인출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, 3,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단

가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

1)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,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(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다카16505 판결,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). 또한,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증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,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.

2) 피고는 망 C의 진정한 의사는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한다. 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피고는 결국 증여세 부담 때문에 증여와 매매 중 매매 방식을 택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).

나. 결론

결국, 피고는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피고 스스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,000,000원(=15,000,000원 + 42,000,000원(2017. 4.~2018. 12.까지 월 200만원))과 그에 대하여 2019. 1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2019. 1. 31.부터 2022. 3. 31.까지 매월 말일에 2,000,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¹⁾.

3.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가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은 부인하고 그중 2,500만 원에 대하여만 망 C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. 원고는 그 2,500만 원에 대하여 ① 피고가 무단 인출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, ② 예비적으로, 위 2,500만 원이 망 C가 피고에게 임치한 것이므로 임치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 청구 또는

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.

나.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 C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 제출 서증 중 2017. 7.

8.경부터 같은 해 8. 9경 사이(망 C는 같은 해 8. 12. 사망하였다)에 이루어진 망 C와 원고의 대화 중 일부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원고의 처가 계속하여 인출 경위를 따져 묻자 '안 한 것 같다'고도 대답했다가 '안했다'고 대답하기도 하여 명확하지 아니하고, 망 C의 통장과 도장에 관한 대화도 주로 원고가 망 C가 이런 저런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망 C가 생각 안나라는 등의 간단한 대답을 하는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 사건 금원의 인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자체가 없고, 원고 스스로도 망 C가 치매 진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는 사정과 녹취록의 내용과 이 법원의 광주시 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 C는 2017. 7.경부터 사망 이전까지 기억력이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.

다. 피고는 위 2,500만 원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.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이상 망 C가 혹은 망 C의 허락하에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된 것이고 그 돈중 2,500만 원이 피고에게 교부된 것이다. 여기에 망 C의 말년에 피고가 주로 망 C를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2,500만 원은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된다.

라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서범준

1) 원고는 '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전보배상청구'를 하고 있으나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분할로 이루어지도록 약정된 이상, 피고의 이행거절을 사유로 그 당시의 손해액을 산정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과 나머지는 향후 발생할 손해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

전보배상청구로 보더라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. 나아가 이 사안은 금전 청구여서 민법 제395조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.

2)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고 주장(2018. 2. 5.자 준비서면)하였으나 그 청구원인을 철회하였다(2018. 2. 7.자 준비서면).